

우리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위기는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몰아치는

거센 파도다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이소영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이소영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



목차

1 프로그램 스케줄

2 축사

남인순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엘리자베스 스텐(Elisabeth Stern)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이사

3 발제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은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4 토론문

나지현 60+ 기후행동 대표

박대성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김경남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프로그램 스케줄

01. 세미나 및 연사 소개		
— 김건영 변호사 / 기후솔루션		5분
02. 사진 촬영		
— 사진 촬영		5분
03. 축사		
— 남인순 국회의원 — 이소영 국회의원 — 엘리자베스 스텐 (Elisabeth Stern) /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이사 (영상 축사)		10분
04. 발제		
발제 1	기후위기가 초래한 노년층의 생명 위협과 국가의 보호의무,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판결과 국내 진정 사례 소개 — 신유정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20분
발제 2	기후변화와 노인인권 - 노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 이은선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20분
05. 토론 좌장 /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나지현 / 60+ 기후행동 대표 — 박태성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 — 지현영 /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 김경남 /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김민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40분
06. Q&A		
Q&A		20분

축사

01 | 남인순 국회의원

02 | 이소영 국회의원

03 | 엘리자베스 스텐(Elisabeth Stern)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이사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 이소영 의원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나지현 60+기후행동 대표님,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님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어느 순간 생명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올해 폭염주의보 발령은 매년 빨라지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더 크고 강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중장기계획인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소관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를 기후변화로 꼽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 건강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2022년 대비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 중 68.5%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노년층은 노화로 인해 건강 및 체력이 저하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기후위기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그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리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더 많은 노년층이 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노년층에 적합한 기후대응정책 마련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년층의 특성으로 인한 기후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좌장으로 세미나를 이끌어주시실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시는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님, 이은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을 하여주시실 나지현 60+기후행동 대표님,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님,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 김경남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노년층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심에도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세미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 그리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50세 이상의 진정한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가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기후 진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은 기후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유럽 폭염 사망자 6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은 79살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폭염 당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연평균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은 각하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노년층의 기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역할이자 책무임에도, 노년층의 기후피해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저도 국회 차원의 노력이 커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가 노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기후 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기후정책을 설계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후위기가 초래한 노년층의 생명 위협과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 의무 〉

—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판결과 국내 진정 사례 소개

신유정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기후위기가 초래한 노년층의 생명 위협과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판결과 국내 진정 사례 소개

법무법인 지향 신유정 변호사



1. 기후위기로 인한 노년층의 생명과 존엄의 위협



기후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인권

“The planetary crisis will hit worst at the people who are already trapped in vulnerable situations (…)

This is a human rights crisis.”

-유엔 인권최고대표 Volker Türk, 2023. 6. 5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난의 빈도와 강도 증가
 - ➔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한 영향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재난이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인권침해 완화뿐 아니라 바로 지금, 취약계층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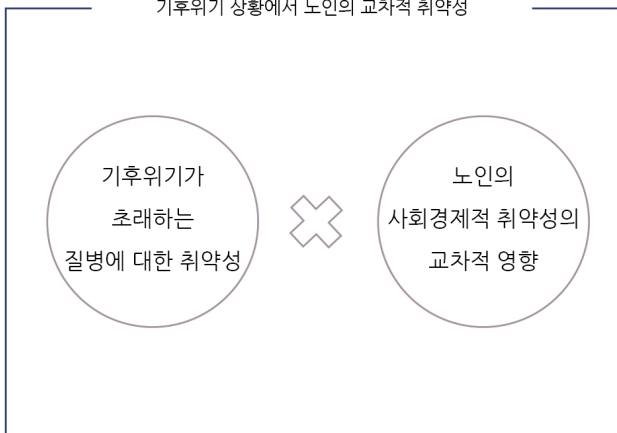


기후위기와 노인의 생명 위협(1)

기후위기가 생명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향유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에 속한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HRC), 2018
- 기후위기는 직접적으로 온열·한랭 등 극단적 기온에 의한 질병,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호흡기 질환, 가뭄·홍수·폭풍 등과 같은 극한 기상현상에 의한 직접적인 외상과 사망, 심뇌혈관질환 등을 야기하며, 간접적으로는 생태계와 매개체의 변화로 인한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 음식과 물의 질 변화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의 발생에 영향 - WHO, 2018
- 기후 재난이 증가하는 데 따른 생명의 위협도 증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인의 교차적 취약성



기후위기와 노인의 생명 위협 (2)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

- 국내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5%인 데 반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 중 68.5%가 65세 이상**
-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연평균의 2배 이상으로 급증
- 그 외 한랭질환,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 오존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 등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사망률을 기록**

- 질병관리청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2022)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교차적 영향

- 고령자 인구집단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고령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게 함
- 노인 인구에서는 **장애, 빈곤,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소외지역 거주**, 도시에서의 **열악한 거주환경** 등의 특성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지배적으로 나타남
- 또한 고령자의 인생주기(life stages)와 연관이 있는 특성, 즉 **건강 및 체력 저하, 소득 상실, 배우자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역시 기후 재난 상황에서 고령자의 적절한 적응 및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Backup] 진정한 사례

Case #1

- 진정한 김OO (77세)
- 배우자가 최근 질병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혼자 거주.
- 산 밑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데,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등이 증가하면서 지붕 파손.
-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 산불,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지만 허리와 무릎에 관절염이 있고, 혼자 거주하는 상태에서 이동과 대피,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Case #2

- 진정한 이OO (89세)
-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들 독립하면서 임대아파트에 혼자 거주.
- 고혈압 치료 중으로 온열질환 위험군.
- 진정한 이복남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30년(1991년~2020년) 평균 폭염 일수는 8.5일이었으나 2021년의 평균 폭염 일수는 15일에 이룸.
- 전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열 사망률은 2000-2004년 사이에 비하여 2017-2021년 사이에 약 68% 증가함.

생명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서 1.5°C 목표

IPCC 제6차 보고서:

-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가 유지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C를 초과하며,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증가
-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C를 넘어 2°C까지 상승할 경우, 상승폭 1.5°C 제한될 때에 비하여, 기온과 관련된 유병률 및 사망률, 오존 관련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
- 1.5°C로 상승폭을 제한할 경우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인구를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을 줄일 수 있고, 고온 및 대기 중 오존농도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질병과 관련된 리스크가 감소함.

1.5°C 제한 목표에 적합한 조치가 없으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고령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더 빠르게, 더 많이 사망할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측

2.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판결의 내용과 의의

사건 개요

- 스위스에 거주하는 시니어 여성(대부분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의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주장한 사건
- 재판소는 스위스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제6조 제1항(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특히 제8조에 관하여, 스위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원고들과 원고적격

1 (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원고적격 인정 - 본안 심리

*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받은 개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진정한 자격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

2 (개인) 1931년~1942년 사이에 태어난 시니어 여성.

3 진단서 제출 - 원고 2의 경우 더운 여름날에 높은 기온으로 병원에서 쓰러짐. 원고 3은 심혈관 건강 문제를 앓고 있고,
4 폭염이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 상당히 고통을 겪음. 원고 4는 폭염으로 채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악화.

원고적격 불인정 - 각하

기후변화 맥락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 국가가 불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대중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원고가 국가의 실패로 인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원고의 개별적인 보호를 보장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



판단의 전제: 국가의 행위-기후위기-인권침해의 인과관계 인정

• 재판소에 따르면 4개 차원의 인과관계가 문제:

- ① 온실가스 배출과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 간의 인과관계
- ② 기후변화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현재와 미래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위험 간의 인과관계
- ③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피해와, 국가 당국의 작위/부작위 간의 개별적 연관성
- ④ 여러 행위자가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에 기여했으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책임의 귀속 문제

재판소는 IPCC 보고서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 ①, ②에 관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존재하고, 인권 향유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점을 인정함
 - ③, ④에 관하여, 국가들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전세계적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위험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고,
- 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는 필연적으로 더 약하지만, **각국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공동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본질은 개인의 인권침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의무의 실패는 인권침해 위험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명시함.**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그 해석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후변화 맥락에서
제8조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해석

- 환경 침해가 신청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 주거의 향유에 충분할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경우 협약 8조 적용
-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국가 당국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8조는 개인이 기후 변화가 그들의 삶,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가 당국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

제8조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

- “UNFCCC와 파리기후협정, 그리고 특히 IPCC의 설득력 있는 과학적 권고에 따라, 국가들은 (...) 제8조에 따른 **인권**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과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에 있어 국가 재량의 한계

- 원칙적으로 국가당국은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재량이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 맥락에서 국가의 재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별됨
- ①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목표 설정에 대한 재량 범위** →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재량 범위가 축소**
 - ②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재량 범위** → 국가의 우선순위와 자원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짐

(참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대한 해석의 배경

국제인권규범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확장적 논의

-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 내지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넘어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도출된다는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령 자유권규약(ICCPR) 제17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주거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유권위원회(HRC)는 저지대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개인진정에 관하여, 호주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음.

생명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이번 판결의 관계

- 이번 판결에서는 개인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생명권(유럽인권협약 제2조)의 문제는 검토되지 않음.
- 다만 재판소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제8조에 대한 해석은 제2조에 대한 해석과 상당부분 유사할 수 있고 이 판결이 제2조에 대한 접근방식을 정의하는 데에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명시함.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1)

• 재판소는 국가가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할 때 검토할 기준 제시. 다만 아래 기준 중 하나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 1 **탄소예산을 정량화하고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정량적 목표 설정**
국제적 기후변화 완화 합의의 포괄적인 목표와 일치하도록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시한과 동일한 기간 내의 전체 남은 탄소 예산을 명시하는 일반 조치를 채택하거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다른 동등한 방법 채택.
- 2 **중간 목표와 감축 경로 설정**
국가가 설정한 기간 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간 감축 목표와 경로(부문별 또는 기타 관련 방법론에 따라) 설정.
- 3 **추적 및 증거 제공: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또는 준수하는 과정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제공.**
- 4 **목표의 개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선의 사용 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업데이트..**
- 5 **정책일관성과 적시성: 관련 법률과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고, 적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2)

• 재판소는 국가가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할 때 검토할 기준 제시. 다만 아래 기준 중 하나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적응 대책의 중요성

- 개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감축 조치는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하거나 임박한 결과를 경감하기 위한 적응 조치로 보완되어야 함.
- 또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절차적 의무

-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중요한 공공 당국이 보유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정책 또는 그 부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관련 규정 및 조치 또는 그 부재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포함하여 대중의 의견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스위스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 스위스가 국내법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고, 이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예산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량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제8조 준수 실패
 - 스위스에서 현재 시행 중인 Co2법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선진국들은 2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적어도 25~40%의 배출량을 줄여야 했음. 그런데 해당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함
 - 스위스 정부가 2021년 Co2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202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법 공백이 있음
 - 스위스는 2021년 NDC를 국제적 합의에 맞게 업데이트했지만, 국내법은 일반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고, 개정법은 2030년 이후의 목표만을 제시하여 2025~2030 입법 공백이 있음 → **재판소: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약속을 채택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의무 충족 불가”**
 - 스위스는 탄소 예산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량화하지 않음

시사점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해석과
우리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의 해석

- 국내에서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규정이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 의무를 넘어서서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다만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 웰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도출함**
→ 이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정부가 **개인의 생명권, 존엄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 제1항)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 법리라고 사료됨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 시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입장:
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졌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
- 본 판결의 시사점: 기후위기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재량은 넓게 인정되지만, 비가역적 인권위험을 완화한다는 보호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의 재량범위는 보다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

3. 국내 시니어 기후인권 진정 사례 -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사건 개요

- 진정인: 평균연령 63세, 최고연령 92세의 고령자 123명
- 진정요지:
 -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른 **생명권** 및 존엄 침해 주장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 불이행)
 - 감축목표의 부적절성뿐 아니라, 고령자의 특수한 인권침해 위험 (취약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부재 지적**
- 처리경과: 유럽인권재판소 사건 개인 원고들과 유사하게 개별적·구체적 권리 침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정책권고 검토 중



기후변화와 국내 노인의 생명의 위협

- 노인의 교차적 취약성: 질병취약성 + 재난취약성 + 사회경제적 취약성
- 우리나라 109년(1912~2020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 연평균기온은 과거 30년에 비해 1.6℃ 상승했고, 지난 109년간 가장 더운 10년 중 6회가 최근 10년 내에 발생
- 2020년에는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 54일)가 있었고 여름 집중호우로 46명이 사망 및 실종, 2022년에는 수도권 집중 폭우로 도시가 침수, 2022년에는 산불이 무려 756건 발생했는데 이는 연평균(537건) 대비 무려 41% 증가한 수치였고, 같은 해에 울진·강릉에 역대 최대 면적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으며, 2023년 봄에는 전남, 광주 지역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이 도래
-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를 넘어 2℃까지 상승할 경우, 상승폭이 1.5℃로 제한될 때에 비하여, 열과 관련된 유병률 및 사망률, 오존 관련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 → 1.5℃ 제한 목표에 적합한 조치가 없으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고령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더 빠르게, 더 많이 사망할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측

생명권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

[사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730 결정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마419 결정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협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의무위반 심사기준: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 기후위기가 노인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이상, 국가는 그와 같은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

(참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생명권과 국가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유권규약(ICCPR) 제6조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후략)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자유권위원회(HRC)의 일반논평, 2018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은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을 필요로”하는데,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생명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됨. 즉 그러한 위협과 상황이 인명 손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거나 개인의 존엄한 생명권 향유를 저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약 제6조의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힘.

이러한 상황에는 (...) 환경 파괴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창궐 (...)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환경악화, 기후변화, 지속불가능한 개발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향유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에 속한다” “생명권 존중 및 보장, 특히 존엄성 있는 삶에 대한 의무의 이행은 공공 및 민간 주체가 초래한 피해, 오염,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당사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힘.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 부존재 (1)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 최소한의 목표로서 1.5℃: IPCC에 따르면 1.5℃ 상승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후위험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발생하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를 초과할 경우 인류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대
-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으로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의 내용: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여 “인권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과 조치를 마련할 의무” 즉 적어도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에 적합한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 부존재 (1)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 IPCC 제6차 보고서: 현재의 각국 NDC를 토대로 하면 모든 감축 시나리오에서 204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을 넘어설 것이며,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 대비 43% 감축하여야 하고, 즉각적이고 현격한 감축(Rapid, Deep and Immediate Reduction)의 중요성을 강조
- 대한민국 현행 NDC: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40% 감축,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 부담의 75%를 2028년~2030년에 배치하여 미래에 급격한 감축을 요구하는 한편 2023년~2027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2%에 불과
 - IPCC 제6차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 및 경로에 현저하게 미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 부존재 (2)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대책 부존재

- 취약계층으로서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적응대책의 수립:
 -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사회적 차별구조인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장애, 직업 등에 따른 차별적 피해가 교차적으로 악화되면서 재생산 →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불평등을 고려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적응대책의 필수 요소:
 - 노인이라는 인구집단의 특수한 취약성(장애, 빈곤,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한 포괄적 대책 필요.
 -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적절한 적응대책은 노인의 특수한 수요를 포함하고, 사회보장체계, 적절한 주거,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재난 관련 정보 전달 시스템,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통합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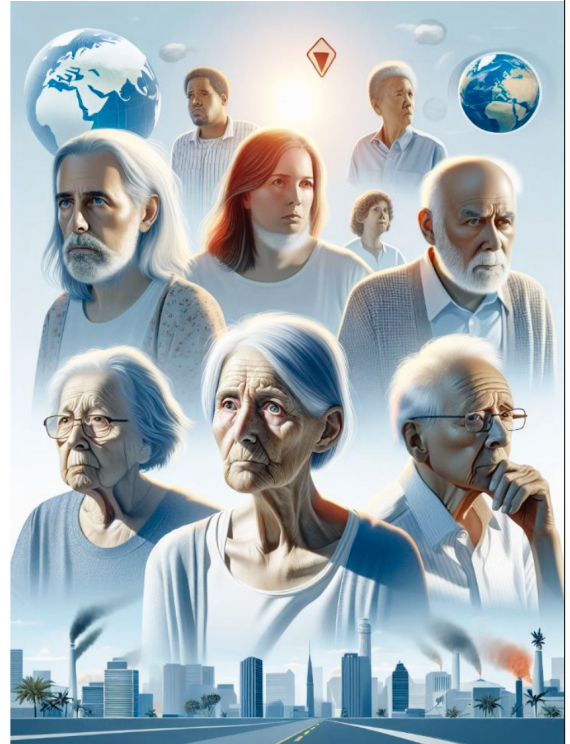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 부존재 (2)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대책 부존재

- **현황:** 2021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 6. 위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
- **데이터 부재:**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기후위기가 미치는 불균등한 영향에 대하여 실태조사나 영향평가 등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 노력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음
 - 탄소중립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 부재로 실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고, 2025년 최초로 시범조사가 있을 예정
- **단편적 대책:**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언론에서 화제가 된 2개 주제에만 단편적으로 초점 - 폭염에 따른 쪽방촌 주민의 피해 완화, 폭염에 따른 야외노동자의 건강 보호
- **연령은 물론 장애, 빈곤, 거주지역, 성별 등의 다양한 취약성과 그 교차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 부재**

3. 마무리하며

결어

-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
- 노인은 대표적인 기후취약계층으로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직면
- 비가역적 인권침해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필요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와 노인인권 - 노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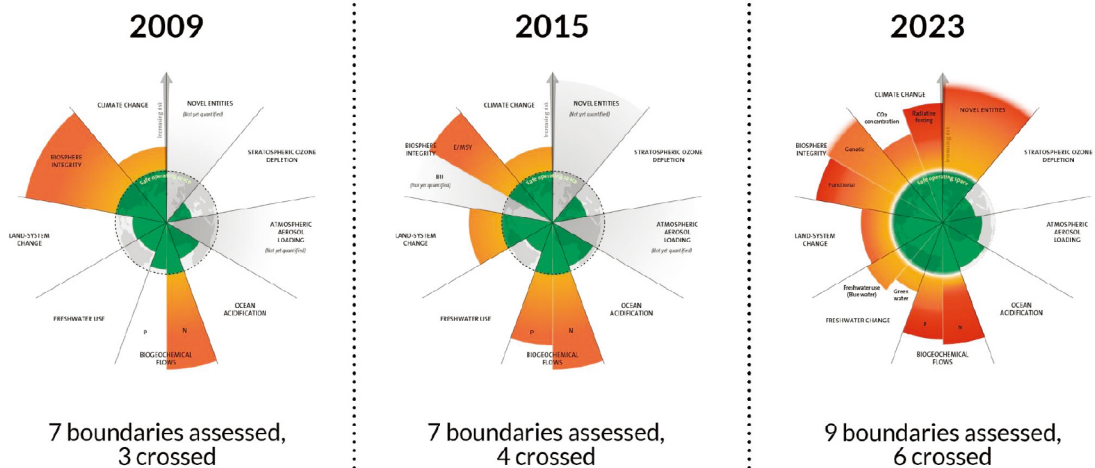
이은선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기후변화와 노인인권-노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이은선 연구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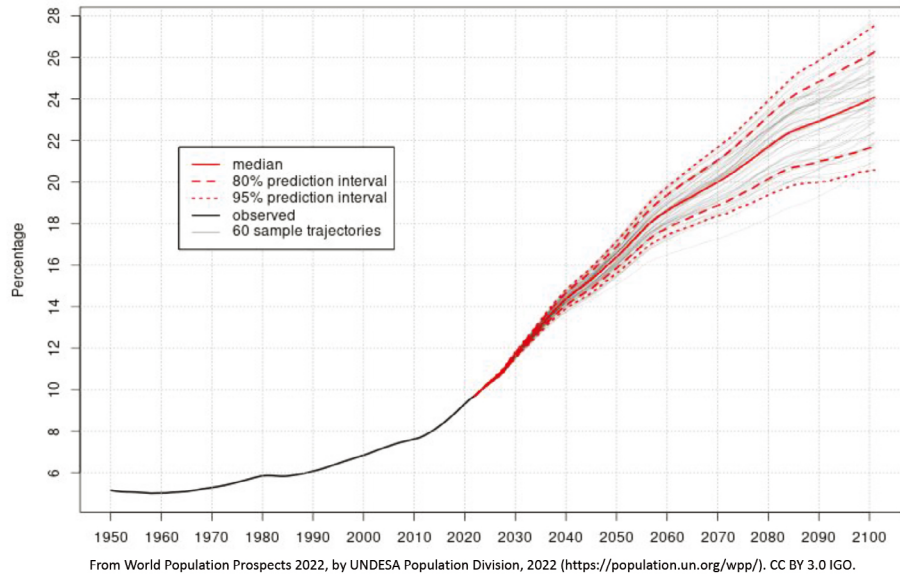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국회세미나
July 02, 2024

지구 위험 한계선



From Planetary Boundaries, by Azote for Stockholm Resilience Centre, Stockholm University (based on Richardson et al., 2023; Steffen et al., 2015; and Rockström et al., 2009) (<https://www.stockholmresilience.org/research/planetary-boundaries.html>). CC BY-NC-ND 3.0.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3

Contents

1. 노인과 기후변화
2. 노인인권과 기후변화
3.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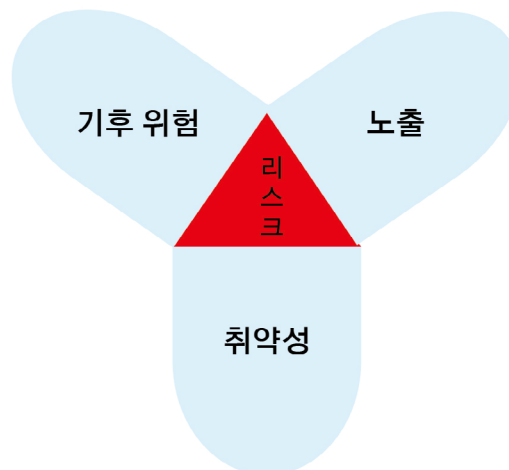
Some Definitions

- Risk (리스크): “the potential for adverse consequences for human or ecological systems, recognising the diversity of values and objectives associated with such systems” (IPCC, 2023, s.v. Risk)
- Hazard (위험): “the potential occurrence of climate-related physical events or trends that may cause damage and loss” (IEA, 2022, para. 1; IPCC, 2023)
- Exposure (노출): “the presence of assets, services,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that could be adversely affected” (IEA, 2022, para. 1; IPCC, 2023)
- Vulnerability (취약성): “the propensity or predisposition to be adversely affected” (IEA, 2022, para. 1; IPCC, 2023)

* 노출과 취약성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취약하지 않을 수 있음

5

1. 노인과 기후변화 (AGAC, in press)



* 기후 변화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기후 위험의 크기, 노출 수준, 취약성 등의 상호 작용에 달림

6

1. 노인과 기후변화 (continued)

- 기후 위험 (Climate Hazards)
 - 폭염, 강력한 폭풍, 폭우, 가뭄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
 - 해수면 상승은 해안 침식과 담수원으로의 염수 침입으로 이어짐
 - 강수 패턴의 변화로 강우 분포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뭄 또는 홍수 증가
 -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생태계 파괴로 이어짐

7

1. 노인과 기후변화 (continued)

- 기후 위험 노출 (Exposure)
 -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온열 질환의 위험에 놓임
 - 날씨 패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야기되는 심한 한파는 저체온증의 발병률을 증가시킴
 - 허리케인,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특히 위험해짐
 - 공기 오염의 증가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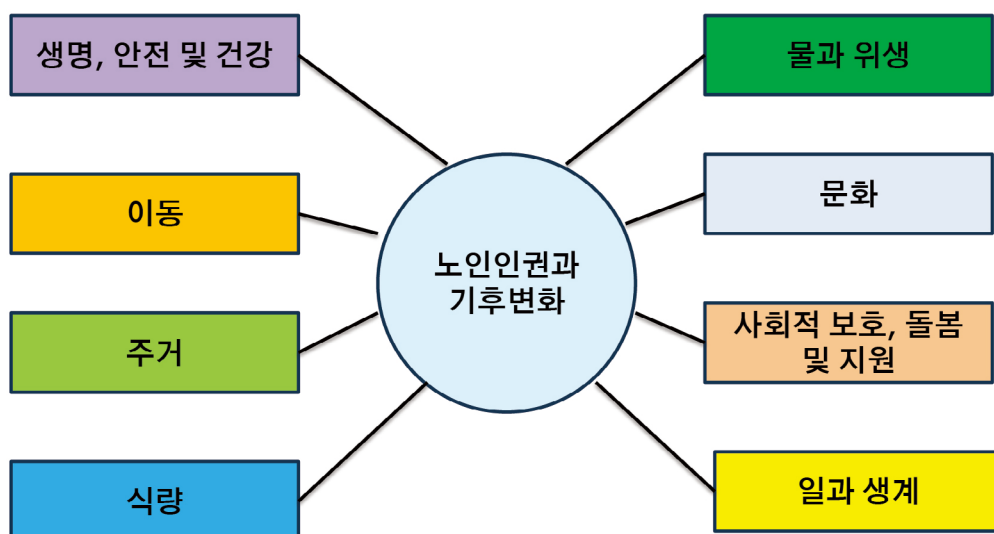
8

1. 노인과 기후변화 (continued)

- 취약성 (Vulnerability)
 - 건강 및 이동성이 약화된 노인은 온열 질환과 같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건강상의 부문에서 더 취약할 수 있음
 - 의료 및 소득에의 제한된 접근 등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은 기상 이변 시 특히 노인의 기후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악화시킴
 - 인지 저하와 같은 연령과 관련된 도전은 노인의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환경적 위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방해함
 - 기후 이변으로 인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변화 및 손실은 특히 혼자 살거나 돌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취약성을 높임

9

2. 노인인권과 기후변화 (AGAC, in press)



10

2. 노인인권과 기후변화 (continued)

•생명, 안전 및 건강

기후변화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폭염, 자연재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리스크를 높이며, 기존의 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응급상황 시 폭력, 착취, 방임, 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높임

•이동

기후 관련 비상사태와 점진적인 기후변화는 노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난 상황 중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 귀가, 피해보상을 받는 것,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기술에 적응하는 것, 이주 결정을 방해하는 문화적, 정신적 애착을 극복하는 것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함

11

2. 노인인권과 기후변화 (continued)

•주거

전통적인 주택 재료의 부족, 극한 기온에 맞지 않는 주택,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 국가 계획에서의 소외, 재난 계획, 대피, 대피소 접근, 재산 피해 복구 및 재건 노력의 어려움 등 기후 변화는 노인의 주거에 영향을 줌

•식량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으며, 종종 생산 및 가용성을 감소시켜 식비 상승, 충분치 못한 식량, 영양부족 및 비상사태 시 필요한 특별 식단, 전통 식품과 구호 노력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 직면한 노인에게 특히 영향을 줌

12

2. 노인인권과 기후변화 (continued)

•물과 위생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불안정은 노인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데, 탈수 및 적절치 못한 위생과 관련된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 리스크를 악화시키며, 물리적, 재정적 및 인프라 장벽으로 야기되는 충분하지 못한 물 및 위생 서비스로 인해 종종 이주해야 함

•문화

기후변화는 문화적 전통과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은 종종 상당한 손실을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적응 조치를 받아들이는데 망설임

13

2. 노인인권과 기후변화 (continued)

•사회적 보호, 돌봄 및 지원

재난과 극한 날씨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서비스 자원에 부담을 주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과 지원이 감소할 수 있음. 기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떠나는 젊은 인구의 이주는 노인에게 가능한 지원을 더욱 줄어들게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이주의 일부는 노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일 수 있음

•일과 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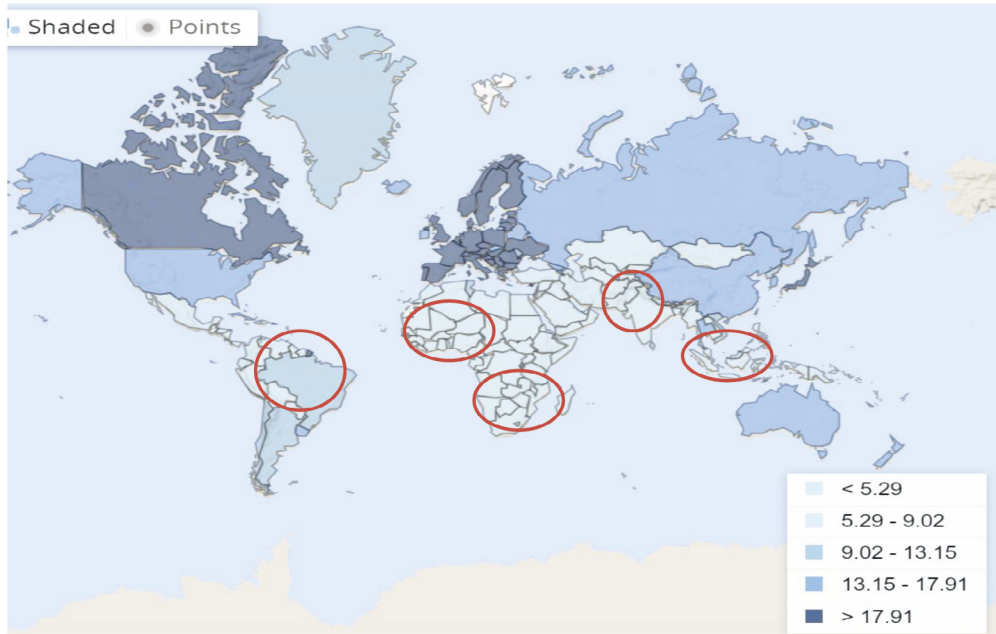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은 특히 농업과 비공식 노동과 같은 부문에서 재정적인 필요로 일을 계속하고 있음. 노인 여성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 적응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14

3. 사례 (AGAC, in press)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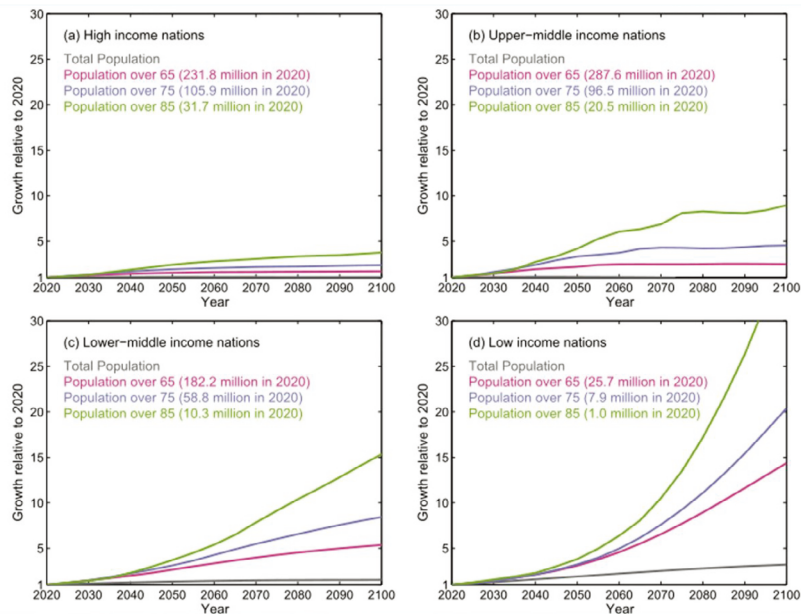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By World Bank (based on UNDESA Population Division, 2022)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CC BY 4.0.

16

노인인구 증가 예상



From “Underestimated Climate Risks From Population Ageing,” by L.J. Harrington & F.E.L. Otto, 2023, *npj Clim Atmos Sci*, 6, Fig. 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612-023-00398-z#citeas>). CC By 4.0.

17

3-1. 유럽 폭염 사례 (continued)

- 유럽은 “폭염의 핫스팟”으로 (Rousi et al., 2022) 유럽의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Kovats et al., 2014). 폭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며 이는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가 주요 원인 (Zachariah et al., 2022). 2022년 7월 폭염으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최고 기온이 40°C 이상으로 기록된 날이 많아졌으며,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지에서 산불이 다수 발생함 (Jones, 2022)
- 2019년 조사에서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의 16개국만이 국가적 수준에서, 6개국은 지역적 수준에서 Heat-Health Action Plan을 갖고 있음으로 나타남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1, pp. 26)

18

3-1. 유럽 폭염 사례 (continued)

- 프랑스

2003년 8월 1일부터 20일 중 9일 연속 프랑스의 평균 최고 기온은 계절 기준(25°C)을 11-12°C 초과. 이 기간 열 관련 사망자는 총 14,72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13,407명으로 91%를 차지함 (Fouillet et al., 2006)

- 영국 잉글랜드

2021년 두 차례 폭염 기간(7월 16일부터 23일; 9월 6일부터 9일) 열 관련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각각 93% (850 out of 915)와 86% (620 out of 719) (UK Government, 2024)

- 스페인

1961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한 2022년 7월 열 관련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8%를 상회함 (2,181 out of 2,217) (MoMo, n.d.)

19

3-2. 캐나다 열돔 사례

- 2021년 6월 25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전례 없는 열돔 현상을 경험했는데 주내 곳곳이 40°C 이상을 기록했으며 밤에도 기온이 높았음
- 이 기간 열 관련 사망자는 619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0%에 육박 (555 out of 619)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2)

20

3-2. 캐나다 열돔 사례

-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Heat Action Plan이 없었고, 냉방 시설 및 취약 인구에 대한 표적 지원이 부족했음 (Human Rights Watch, 2021).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응급 의료 서비스는 열돔 현상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까지 비상 운영 센터를 가동하지 않았음 (Daflos, 2021).
- 노인이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여러 건 보도되었음 (Little, 2021). 또한 빈곤 노인은 냉방 장치 구입이 어려워 폭염 기간 높은 실내 온도로 인한 열 및 기침과 같은 질환에 시달렸다고 보고함 (“제대로 된 선풍기나 에어컨은 사치지요”; “적은 연금에 돈을 써야 할 때마다 괴로워요”) (Human Rights Watch, 2021, sec. Poverty).
-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노인이 취약 인구임을 명시한 BC Heat Alert and Response System을 개발했고, 2022년 6월 시행함 (BC Center for Disease Control & BC Ministry, 2024).

21

3-3. 호주 홍수 사례

-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리스모어에서 발생한 홍수 당시 주와 지역 당국이 적절한 홍수 경고, 대피 경고 또는 구조 지원을 제공하지 못해, 노인 및 기타 취약 인구가 정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함. 80대 여성 2명과 50대 여성 및 남성 1명씩 총 4명 사망 (Human Rights Watch, 2022).
- 일부 70대와 80대 주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최신 날씨 정보나 경고에 접근할 수 없었음. 또한 홍수 수위가 약 11m 또는 12m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당국의 문자를 받고 대비하지 않은 사람 중 많은 이가 낭패를 봄 (실제 14.4m)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손자가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죽었을 거예요”) (Human Rights Watch, 2022, sec. Older People).

22

3-4 인도

- 2022년 인도의 60세 이상 인구는 1억 4,900만 명 (총인구의 10.5%) (UN/DESA Population Division, 2022)
- 2050년까지 3억 4,700만 명(총인구의 20.8%)으로 현재의 두 배 예상 (UN/DESA Population Division, 2022)
- 인도 노인의 문맹률(56%)과 경제적 의존도(65%)는 높음 (Central Statistics Office, 2016)
- 인도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높은 문맹률과 경제적 의존도, 사회에 만연한 계급 및 카스트 기반 차별 외에도 성차별을 감당하고 있음 (Agewell Foundation, 2015)
- 인도 농촌 노인은 총 노인 인구의 70%에 육박 (Central Statistics Office, 2016)
- 인도 농촌 노인은 도시 거주 노인보다 교육 수준이 낮고 노후를 위한 장기 저축 또한 부족하여 비상사태 시 취약성 가중 예상 (Central Statistics Office, 2016).

23

3-4 인도 (continued)

- 인도 인구의 80% 이상이 기후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거주 (World Bank, 2023)
- 인도의 평균 기온은 금세기 말까지 4.4°C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Krishnan et al., 2020), 폭염 노출은 2021년에서 2050년 사이에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avindra et al., 2024)
- 2040년에 들어서면 극심한 더위로 인해 작물 수확량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World Bank, 2013)
- 계절별 물 부족, 기온 상승, 불규칙한 강우, 장기 가뭄 및 기타 기후 변화 관련 재해로 인도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특히 가뭄은 인도 북서부 등지에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World Bank, 2021), 이 지역의 인구는 기후 위기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것임

24

3-4 인도 (continued)

- 특히 타르 사막의 기상 이변은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에게 과도한 도전임
- 이는 비농업 활동(노동 집약적 육체노동 포함)을 통해 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
- 연령주의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도 유급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하고, 물 부족과 가뭄은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며, 다른 생계의 기회는 이 지역에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그 결과 기후 변화는 기존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과 같은 취약 인구는 적은 양의 식량과 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축을 먹일 수 없어 궁극적으로 빈곤과 기아의 순환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

25

3-4 인도 (continued)

- 타르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GRAVIS라는 인도 NGO와 그 지원을 받는 노인은 기후 변화 적응 전략으로 다음의 활동을 수행:
 1. 세대 간 배움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경험적, 기술적 지식의 상호공유를 이끌어내고 있음
 2. 물과 식량 불안정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 수집 구조물 및 농업 배수로와 같은 지역사회 자산을 개발하고 있음 (사진 1)
 3. 원예 활동을 통해 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을 보장 (사진 2)

26

3-4 인도 (continued)

사진 1. 빗물 저장 탱크에서 물을 걷는 여성 노인 (By GRAVIS)



사진 2. 사막 원예 단지에서 자라는 레몬 (By GRAVIS)



27

요약

- 지구 위험 9개 영역 중 6개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때 전 세계적인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 기후변화와 노인, 그리고 노인의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임
- 아직 노인이 많지 않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고령화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리적 위치상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대비가 시급함

28

References

- Agewell Foundation. (2015). *Agewell study: Gender discrimination among older women in India*. <https://www.agewellfoundation.org/pdf/reports/GENDER%20DISCRIMINATION%20AMONG%20OLDER%20WOMEN%20IN%20INDIA.pdf>
- ASEM Global Ageing Center. (Ed.). (in press). Climate change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ssue Focus*. 05(01).
-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 BC Ministry of Health. (2024). *BC provincial heat alert and response system (BC HARS): 2024*. <http://www.bccdc.ca/resource-gallery/Documents/Guidelines%20and%20Forms/Guidelines%20and%20Manuals/Health-Environment/Provincial-Heat-Alerting-Response-System.pdf>
- Central Statistics Office. (2016). *Elderly in India*. Indian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https://mospi.gov.in/sites/default/files/publication_reports/ElderlyinIndia_2016.pdf?download=1
- Daflos, P. (2021, July 3). *BCEHS struggles to explain alert level and morale issues after deadly heat wave*. CTV News Vancouver. <https://bc.ctvnews.ca/bcehs-struggles-to-explain-alert-level-and-morale-issues-after-deadly-heat-wave-1.5495233>
- Fouillet, A., Rey, G., Laurent, F., Pavillon, G., Bellec, S., Ghiheneuc-Jouyaux, C., Clavel, J., Jouglu, E., & Hémon, D. (2006). Excess mortality related to the August 2003 heat wave in France.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0(1), 16–24. <https://doi.org/10.1007/s00420-006-0089-4>
-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2). *Extreme heat and human mortality: A review of heat-related deaths in B.C. in summer 2021*. https://www2.gov.bc.ca/assets/gov/birth-adoption-death-marriage-and-divorce/deaths/coroners-service/death-review-panel/extreme_heat_death_review_panel_report.pdf
- Human Rights Watch. (2021, October 5). *Canada: Disastrous impact of extreme heat—Failure to protect older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British Columbia*. <https://www.hrw.org/news/2021/10/05/canada-disastrous-impact-extreme-heat>
- Human Rights Watch. (2022, November 3). *Australia: Flood response failed to protect most at risk—Inclusive climate action, planning needed to address extreme weather*. <https://www.hrw.org/news/2022/11/03/australia-flood-response-failed-protect-most-risk>
- IEA. (2022). *Climate resilience policy indicator*. <https://www.iea.org/reports/climate-resilience-policy-indicator>
- IPCC. (2023). *Glossary*. <https://www.scribbr.com/apa-examples/website/>
- Jones, S. (2022, July 17). Forest fires rage across Europe as heatwave sends temperatures soaring.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l/17/forest-fires-rage-across-europe-as-heatwave-sends-temperatures-soaring>
- Kovalts, R. S., Valentini, R., Bouwer, L. M., Georgopoulou, E., Jacob, D., Marlin, E., Rounsevell, M., & Soussana, J.-F. (2014). Europe. In V. R. Barros, C. B. Field, D. J. Dokken, M. D. Mastrandrea, K. J. Mach, T. E. Bilir, M. Chatterjee, K. L. Ebi, Y. O. Estrada, R. C. Genova, B. Girma, E. S. Kissel, A. N. Levy, S. MacCracken, P. R. Mastrandrea, & L. L. White (Eds.),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B: Regional aspect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p. 1267–1326).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2/WGIIAR5-Chap23_FINAL.pdf

29

References (continued)

- Krishnan, R., Sanjay, J., Ganaseelan, C., Mujumdar, M., Kulkarni, A., & Chakraborty, S. (Eds.). (2020).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over the Indian region: A report of the Ministry of Earth Sciences (MoES), Government of India*.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81-15-4327-2>
- Little, S. (2021, July 8). *‘He died waiting for the paramedics’: B.C. family grieves father’s heat wave death*. Global News. <https://globalnews.ca/news/8014821/bc-heat-wave-death-ambulance-wait/>
- MoMo. (n.d.). *Mortality reported, observed, expected and attributable to temperature*. Retrieved June 23, 2024, from https://momo.isciii.es/panel_momo/
- Ravindra, K., Bhardwaj, S., Ram, C., Goyal, A., Singh, V., Venkataraman, C., Bhan, S. C., Sokhi, R. S., & Mor, S. (2024). Temperature projections and heatwave attribution scenarios over India: A systematic review. *Heliyon*, 10(4). <https://doi.org/10.1016/j.heliyon.2024.e26431>
- Rousi, E., Kornhuber, K., Beobide-Arsuaga, G., Luo, F., & Coumou, D. (2022). Accelerated western European heatwave trends linked to more-persistent double jets over Eurasia. *Nature Communications*, 13, 3851. <https://doi.org/10.1038/s41467-022-31432-y>
- UK Government. (2024, February 29). *Heat mortality monitoring repor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t-mortality-monitoring-reports/heat-mortality-monitoring-report-2021>
- UN/DESA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https://population.un.org/wpp/>
- World Bank. (2013). *India: Climate change impacts*.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3/06/19/india-climate-change-impacts>
- World Bank. (2021). *Climate risk country profile: India*.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sites/default/files/country-profiles/15503-WB_India%20Country%20Profile-WEB.pdf
- World Bank. (2023). *India: Helping people buil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india/brief/advancing-climate-adaptation-building-resilience-to-climate-change-in-india>
-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1). *Heat and health in the WHO European region: Updated evidence for effective prevention*.
- Zachariah, M., Vautard, R., Schumacher, D. L., Vahlberg, M., Heinrich, D., Raju, E., Thalheimer, L., Arrighi, J., Singh, R., Li, S., Sun, J., Gabriel Vecchi, Yang, W., Seneviratne, S. I., Tett, S. F. B., Harrington, L. J., Wolski, P., Lott, F. C., McCarthy, M., ... Otto, F. E. L. (2022). *Without human-caused climate change temperatures of 40°C in the UK would have been extremely unlikely*.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without-human-caused-climate-change-temperatures-of-40c-in-the-uk-would-have-been-extremely-unlikely/>

30

토론

- 01 | 나지현 60+ 기후행동 대표
- 02 |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
- 03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 04 | 김경남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05 |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기후위기 시대, 노년의 생명권 보호가 시급

토론문 | 나지현(60+기후행동 공동대표)

1. 60+기후행동이 노년 기후피해 진정에 참여하게 된 이유

60+기후행동은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각오로 모인 단체로 개발과 성장에, 풍요와 편리를 이유로 지구를 함부로 훼손해서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온 것을 반성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노년들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월 19일, 불타는 지구의 화재현장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대원의 마음으로 119로 창립 날짜를 잡았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상징적인 장소인 탑골 공원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와 노년이 기여자이며 수혜자인 국민 연금의 석탄투자 중지를 외치며 노년의 힘을 보태는 어슬렁행동을 하는 한편 '인생전환 녹색 전환'이라는 구호 아래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활동과 사회적 상속 운동 등의 실천을 하고 있다. 작년 노인의 날에는 '생태문명전환을 위한 신노년선언'을 발표하고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기후변화는 심각하여 작년에도 올해도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초여름인데도 십여년전의 한여름과 같은 날씨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 약자인 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어 기후피해 당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생명과 건강, 생활권을 지키는 것이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다. 멀리 스위스의 노인들의 기후소송에서 힘을 얻었고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기후 소송, 아기 기후소송에도 힘을 얻었다. 우리의 진정 또한 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국가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를 늦추는 행동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되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기후피해가 대표적인 기후약자인 노년의 생명권과 생활권 등 인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자체 조사와 강력한 결정문등으로 사회 전반과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넣고 정책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역할을 하기 바란다.

2. 위협받고 있는 노년의 생명권 – 도시와 농촌

2022년 질병관리청의 제1차 기후보건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에게 많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킨다.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외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당장 2022년과 2023년도 그렇다.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5/20-8/2 사이의 온열질환자는 1,385명으로 22년 동기간 대비 29.0%가 증가하였다. 특히 장마가 끝난 7/26-8/2 사이에만 628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온열질환자의 20.4%는 70대 이상으로 많은 숫자인데 사망자의 경우 18명중 13명 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¹

도시에서 가난한 노인과 외진 곳에서 고립된 노인의 위기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빈곤율이 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노인은 주거권도 취약하며 좁고 환기가 어렵고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세 부담으로 냉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열악한 주거환경인 동자동이나 돈의문의 경우 온열 사망자가 해마다 나오고 2022년의 서울 반지하에서의 비극적인 사건 또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노인들은 1인가구도 많아 홍수 등의 재해나 폭염으로 인한 쇼크 등의 재해가 생길 조력을 구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연금등 노후대책이 없어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노인의 주된 일자리인 경비와 청소, 식당조리실은 폭염에 너무나 위험한 공간이다. 23년 온열 질환자의 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은 “단순노무”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 질환 산재승인 사망자는 18명이나 여름철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뇌심혈관/심장질환 사망자는 38명에 이르렀다. 올해도 닥칠 폭염과 홍수 등에서 노인과 옥외노동자, 어린이, 주거빈곤자 등을 비롯한 기후약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이 예측되는데도 정부와 정치권만이 이 심각성을 못본체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상황 또한 기록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농촌의 인구는 고령인구와 그 노동력을 보조하는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이다. 23년 온열질환자의 직업 2위는 농업노동자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기후 피해 진정인 중 한사람이며 귀촌 19년이 되는 한상훈님의 사례로 일면을 엿보도록 하겠다.

1 2023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2023.8.4



함상훈 / 2006년 귀촌, 19년차 총주 거주

[1. 기후관련]

1-1 무더위 심화(기온 상승)

- 시내와 5도 차이 나는 골짜기인데 처음 3년간은 선풍기도 안 켜으나 참다가 2018년 에어컨 설치
- 폭염으로 농사일 어려워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노동

1-2 폭우: 거의 홍수 피해 없던 곳인데 2020년 재난지역 선포

[2. 자연생태 환경]

2-1. 하천 둔치 녹화와 물속의 녹조 증가 :

- 비료 외에도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전반적 수량 감소, 강수 패턴이 변화됨
- 수온이 상승하자 산소 요구량이 적은 녹조에 경쟁 우위 제공

2-2. 생물상의 변화 :

- 여름 철새 물떼까치가 상주하는 현상이 생김
- 두꺼비가 안 보임
- 곤충의 변화 (벗나무모시나방 창궐,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새로 등장)

[3. 작물 재배]

노지 작물 재배 피해

-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 영향 :
기온 상승은 생장 촉진, 생리적 스트레스 증가로 수확량 저감, 병해충 증대
- 실례 : 오이, 토마토는 죽는 개체가 늘어나고 재배 기일이 단축되어 수확량이 저감됨.
몇 년 전부터는 10월까지 달리던 토마토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남.
- 2020년 재난 수준의 과수화상병

[4. 주민 생활의 변화, 특히 노인]

노인 외출 등 보행 이동 제한, 농촌지역 외부 활동 장애 (외부의 운동기구 사용이 힘들)

3. 기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는 일은 더 앞당겨질 것 같다. 해마다 폭염과 홍수,산불이 반복되고 해마다 기후 피해 약자는 늘어나고 있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서에서 요구한 대로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또 당장 해야 할 것으로는

1)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 기후 위기로 인한 생명권과 생존권은 현재와 미래에 인권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기후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후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기후변화가 인권을 심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엄중한 권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내용에 기후 위기를 막고 기후 피해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건 의료 정책, 교육, 주거환경 개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옥외노동자 휴식 의무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등

3) 날로 빠르게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해 에너지, 산업, 정부예산의 우선 순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60+기후행동은 기후피해 당사자로서 또 다른 기후약자와 연대하는 노년의 모습으로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기후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및 향후 계획

토론문 | 박태성(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박태성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러한 세미나를 기획해 주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남인순 의원실, 이소영 의원실, 60+(육십플러스)기후행동, 기후솔루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는데, 올해가 절반 정도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의미하는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몸소 체감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는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현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더욱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의 증가나 대기질의 악화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합니다. 감염병의 유행이나 홍수·산사태 등으로 인한 거주 공간의 소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특히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IPCC의 6차 보고서도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노인은 기후위기를 마주함에 있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러한 인식하에 2021년 '기후변화 맥락에서 노인 인권 분석 연구'보고서¹를 발표하였고, 해당 보고서는 국가로 하여금 노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에 있어 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A/HRC/47/46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사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 해당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적응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 조사', 2023년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농어민 노인과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발제해주신 신유정 변호사님께서 노인 123명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주셨고, 해당 진정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이관된 진정사건과 더불어 2022년 실시한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정책개선 권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2023년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또 다른 정책개선 권고를 준비하고 있고, 정부가 2025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에 대한 권고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2021년부터 '노인인권포럼'을 운영해 왔고, 노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기후위기와 노인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며, 국회·시민사회단체·당사자 등과 협력하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노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보장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노인인권 관련하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지와 지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기후활동가의 부모님 전상서

토론문 | 김민(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 민이라고 합니다.

세대 간 연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청년활동가인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발제자 2분, 토론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과 달리 저는 법을 전공한 전문가도, 재판의 당사자인 시니어 세대도 아닙니다. 1,200만 명의 20~30대, 그 중에서도 서울에 살고, 기후위기에 나름 진심인 청년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 대한 자기고백이자, 제 부모님께 쓰는 편지에 쓸 법한 내용에 가깝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평범합니다. 반려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요. 집 근처 공원에서 언제든지 달리기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꿈꾸는 미래는 사치일 것 같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작년 한해 동안 기후지표를 측정해보니 모두 차트를 넘어서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국회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와 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6월은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어릴 때만해도 여름이 오면 물놀이와 여름휴가 떠날 생각에 들떴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름나기가 두려워집니다. 홍수와 폭염으로부터 과연 내 부모님은 괜찮을 지, 만약 그 피해를 겪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에게는 9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10년 전부터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들은 저의 소중한 가족이자,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간혹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갈수록 농사가 힘들어진다고,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농담 섞은 말로 하소연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고추가 제 때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폭설로 인해 읍내로 나갈 수 없어 며칠동안 집에만 계신 적이 기억납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무릎수술을 하셨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전화통화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있지 않으면 생활하시기 불편합니다. 만약 홍수, 폭염, 산불, 이런 기후재난이 제 가족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도 무섭지만, 소중한 제 가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 또한 두려워집니다.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후위기가 어떻게 닥칠 지 알 수 없는 불안함,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무기력감, 그로 인한 우울감, 감정의 모양이 어떤지 다양하고 복잡적입니다. 심지어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극한 이상 기후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청년세대는 기후 우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서로 다르지만 원인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기후위기는 내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견된 미래와 곧 닥칠 위기로부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경을 전공했고, 전공을 살려 어떤 커리어를 가질 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6년 빅웨이브 활동을 시작했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며 지금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해 뾰족하고 날선 언어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 부모님에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힘든 IMF를 겪으면서 지금 제 나이에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향해 모진 일갈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제가 건강히 자랄 수 있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마지노선을 지킨다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부모세대의 안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도 저와 같은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이실 것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갈 자식세대를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다른 생각할 시간에 수능 문제나 한 쪽 더 풀라는 잔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힘을 합쳐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빅웨이브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당사자이지만, 또한 문제해결의 주체이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세대로서 부디 올 여름에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모두 무탈하게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년층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기후적응 대책이 수립되고 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전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함께해요



본 인쇄물은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